

◎ 통계청 고시 제 2023 -95호

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(협의)을 고시합니다.

2023 년 3 월 20일
통 계 청 장

1. 통계의 명칭 : 경찰청범죄통계
2.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: 경찰청
3. 통계작성승인(협의)번호 [작성승인(협의)일] : 제132004호 [2007.11.28.]
4.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: 2023.3.15.
5.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:

| 구분 | 변경전 | 변경후 | 변경사유 |
|---------------|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작성항목 (결과표) | 분기별수사통계(형법 특별법분류) ○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 <26개 세부항목> - 강력범(4) - 절도범(1) - 폭력범(8) - 지능범(9) - 풍속범(2) - 기타(1) - 특별법범(1) | 분기별(잠정) ○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 <39개 세부항목> - 신종범죄유형 14개 추가 (마약범죄, 환경범죄 등) - 문구 명확화 8개 수정 (절도범죄, 지능범죄 등) - 항목 1개 삭제(특별법범) ※ 추가(14), 수정(8), 삭제(1) | ○ 신종범죄유형을 반영한 통계작성 · 제공 |